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431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4312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단11212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시환

변론 종결2024. 10. 18.

판결 선고2024. 12. 13.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단1121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B은 원고에게 25,311,286원 및 그 중 20,946,361원에 대하여 2022.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3. 체결된 증여계약은 25,311,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311,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욱

판사박소연

판사김수연

별지